

영국사례 1

개인의 슬픔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라 하여 모두 실천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탁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 불만제기인 : James Marshall
- 적용된 조항 : 5조
- 언론사 : Falkirk Herald

청구내용

James Marshall은 2009년 7월 2일자 「Falkirk Herald」에 보도된 ‘피가 이웃 집으로부터 나의 아파트로 스며들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자신의 슬픈 개인 가족사를 공개해 언론사 편집자가 지켜야 할 실천강령 5조(슬픔과 충격에의 침범)를 위반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Andrea Fraser가 자신의 집에서 악취가 나고, 부엌으로 피가 스며들어오며, 구더기가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방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문제

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했던 사람의 시신(불만제기자 James Marshall의 아들)이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어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Fraser 부인이 피 묻은 주방용품을 들고 있는 사진과 구더기가 들어 있는 상자 사진을 함께 실었다.

불만을 제기한 James Marshall은 특히 피 묻은 주방용품을 들고 있는 사진은 보도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이것이 충격과 실의에 빠진 자신의 가족에게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당해 보도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신문사는 또 Fraser 부인이 자신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방정부에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당 사진들은 문제의 심각성

을 보여 주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기사에 실린 사진들은 공공의 이익과 뉴스 가치 고양을 위해 교통사고나 살인 사건 현장 사진을 신문기사에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만제기자 아들의 사망 사실은 Fraser 부인의 거주환경 문제 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사망자 가족의 아픔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특히 사망자의 신분은 보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평결

PCC는 당해 신문의 보도(특히 피 묻은 사진)가 사망자 유가족의 슬픔을 배가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며 불만제기인과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

불만제기인도 인정했듯이 Fraser 부인은 자신의 주장을 신문사를 통해 나타낼 권리가 있다. 그러나 PCC는 당해 기사가 Fraser 부인의 주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PCC는 실청강령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피 묻은 사진의 공표가 기사에 꼭 필요한 것이었나, 하는 부분을 중요한 쟁점으로 상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미묘하고 중요한 쟁점이 있었다. PCC는 해당 사진이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Fraser 부인의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정확히 나타내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이해한다.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PCC는 사

건의 공표가 Fraser 부인이 처한 상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필요했으며, 그것이 불만제기인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달리 불필요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더욱이 신문은 사망자의 신분이나 불만제기인의 아파트 내부 사진은 보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망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러므로 실청강령 5조의 위반은 없었으며 불만제기 내용은 기각한다.

영국사례 2

추측성 기사에 대해 근거가 되는 적절한 증거가 없다면 정확성을 갖춘 기사라 볼 수 없다

- 불만제기인 : Brian Binley
- 적용된 조항 : 1조
- 언론사 : The Daily Telegraph

청구내용

Northampton South 의회 의원인 Brian Binley는 6월 17일과 6월 20일자 「Daily Telegraph」가 게재한 ‘자신 소유의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57,000 파운드

청구’ 및 ‘Brian Binley, 언론보좌관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대가로 16,000 파운드 청구’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어 실청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했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각 기사는 불만제기인의 비용 청구 내용과 함께 그가 백만장자이며 수백만 파운드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여 언급했다. 불만제기인

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공개한 두 기사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신문사가 직접 자신의 재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Brian Binley 의원을 백만장자로 묘사한 것은 그와 그의 부인이 BBC Marketing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BBC Marketing은 220만 파운드 규모

의 회사로 130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신문사는 Brian Binley 의원이 받고 있는 임금, 배당금, 주식판매이익금을 고려하면 그를 백만장자 혹은 수백만장자로 지칭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Brian Binley 의원은 이 같은 추측성 계산은 전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한다.

신문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불만제기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사가 보도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관련 기사(6월 17일, 20일)에 대하여 Brian Binley 의원은 자신이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사는 그 점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결

PCC가 판단을 요청받은 내용은 작은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 사건 결정이 갖는 함의는 크다. 신문사는 두 번의 기사를 통해 불만제기인의 재정 상태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단지 불만제기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PCC는 신문이 불만제기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게재하기 전 불만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정정 및 사과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호주사례 7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과 합치하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평결번호 1439

호주신문평의회(APC)는 2009년 8월 13일 테즈메이니아의 일간 신문 「The Advocate」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Gatty Burnett 의 불만제기를 기각했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경찰이 2009년 8월 9일 오전 Shannon Blake를 체포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Blake가 자신의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내사를 실시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제기인은 Blake의 지인이며 경찰이 Blake를 체포할 당시 그와 Devonport 거리에 함께 있었다.

불만제기인은 Blake가 경찰에 의해 강압적으로 경찰서에 인치된 후, 수 시간 동안 불법적인 구

금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Blake가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다고 기술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찰이 Blake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분사했으며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Blake는 이후 아무런 혐의 없이 석방되었다.

APC는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했다. APC는 실제 Blake가 경찰에 연행 당한 일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경찰에 의한 ‘체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문사가 ‘체포’라는 단어로써 그 상황을 묘사하였더라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일반인을 경찰서에 유치하는 것은 ‘체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APC는 경찰이 Blake에게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조사에서 밝힐 부분이며 APC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PC는 신문이 사용한 ‘체포’라는 단어가 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호주 사례 2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른 내용에 관한 보도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 평결번호 : 1428

호주신문평의회(APC)는 PatMcIntosh가 2009년 1월 17일자 「AAP」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불만을 인용했다.

불만 대상 기사는 Maitland 병원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유산하게 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신문은 남편의 말을 인용하여 “임신한 부인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그렇게 만난 의사는 단순히 임신 중이냐는 질문만 한 뒤 다음날 다시 와서 초기

임신 클리닉을 찾아가라며 그것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의사가 부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생은 더러운 것(Life's a bitch)”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만제기인은 기사가 ‘잘못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아주 심각하게 수준이 떨어지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30분 정도의 지체는 부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 속하며, 다음날 다시 초기 임신 클리닉의 진찰을 받으라는 지

시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유산 위험이 있는 산모에게 가장 일반적인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 발언에 대해서도 동정심과 걱정의 표시라고 말했다.

「AAP」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에 대해, 기사는 사건의 분석을 시도하였거나 주장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이 겪은 사건과 그에 대한 발언,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이며, 일반적인 신문 기자가

병원 내부의 관례나 규칙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기대범

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PC는 결론적으로 이 기사가

사실을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했다.

뉴질랜드 사례

품위나 취향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이 가변적인 것이므로, 품위훼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황을 필요로 한다

사건번호 : 2083, KEN ORR
AGAINST THE
PRESS

신문평의회(PC)는 Ken Orr가 「The Press」에 게재된 기사가 여성과 공공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PC는 불만내용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포함된 사진의 내용, 크기, 경고문의 부적합성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배경

불만제기 대상 보도는 「The Press」 섹션면에 게재된 ‘고통

으로부터의 쾌감’ 제하의 기사로 ‘교회에서의 BDSM 세계’라는 부제와 ‘경고 : 이 기사는 성인의 성관계 관련 기사임’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기사는 ‘Uncommon Bonds’라는 단체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bat줄에 묶여 수동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는 한 참여자의 사진도 실고 있다. BDSM은 피학적·가학적 성욕을 뜻한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 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도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불만내용

불만제기인은 PC에 불만을 제기하기 앞서, 신문사가 해당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언론 스스로가 가지는 ‘전문영역의 규범’을 어겼다고 「The Press」의 편집장에게 직접 항의했다.

그는 기사가 여성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공공의 품위를 훼손했으며, 성욕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비취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사에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과 모욕에 대한 반대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기사가 BDSM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The Press」가 독자들에게 대한 언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측의 답변

「The Press」 편집장 Andrew Holden은 BDSM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들이 해당 기사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자신은 그 단체 회원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사들은 어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사가 남자들의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왜곡하여 묘사했다는 의견과 매춘 등을 옹호하는 것을 비취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논의 및 결정

불만제기 내용은 신문이 일반적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직무상 요구되는 고도의 규범을 어겼다고 전제하고 있다. 물론 언론이 가장 높은 단계의 직무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PC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PC는 그와 같은 문제의 심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일부

독자에게 불쾌한 내용이 다른 독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품위나 취향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항상 변화하는 일반인의 태도나 문화를 반영하며 진화한다. 몇 세대 전에는 품위를 손상시키고 불쾌감을 줄 수 있었던 내용도 현재의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품위의 훼손’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무엇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데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기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 품위훼손을 근거로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 예도 있다. 그러나 불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그룹에 대한 근거 없는 품위훼손 등 심각한 정황을 필요로 한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일부 독자에게 불쾌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자체는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불만제기인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듯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여성을 명백히 비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PC는 최근 BDSM과 관련한 판례들을 근거로 불만제기 대상 보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성 관계에 복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기사보다 크고 선명하게 게재한 것에 대해 PC는 우려를 나타낸다. 편집장도 진술서에서 사진은 진실 보도를 위해 꼭 필요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게재된 사진이 일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PC가 판단해야 할 부분은 사진이 일반의 공공 품위를 훼손시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C는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PC는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사진과 부가된 경고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다. 어린 자녀와 부모들에게 그 경고문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글자 크기가 더욱 컸어야 하고, 눈에 잘 띄게 디자인 되었어야 했다. 